● ‘22년 하반기 조합원 주거지원금 신청안내문

Ⅰ. 주거지원금 지원 기준

구분	주택임차지원금	주택구입지원금
지원 한도	최대 5천만원	최대 1억원
신청 대상	책임매니저(G4) 이하 미혼자 포함 전 직원 ※ 임원, 계약직, 촉탁 등 임시직 제외	
상환 조건	7년(84개월) 원금 균등 상환	10년(120개월) 원금 균등 상환
이자 부담	본인부담 年 1.0% ~ 2.0% ※ 10/1 기준 1%, 기준 금리 상승 시 본인 부담 이율 증가 가능 (회사부담 이자는 급여지급 및 과세소득 대상 포함)	

※ 개인 신용등급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따라 대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반드시 각 사업장 현대차 새마을금고 방문 후 대출 한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Ⅱ. 신청조건

구분	주택임차지원금	주택구입지원금
신청조건 (모두 해당)	① 입사일 만 1년 후 부터 신청 가능 (재직 중 1회) ②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 ③ 신청기준일 사택, 숙소 등 주거지원 제도의 비수혜자	④ 기존 주거지원 대출 제도의 비수혜자 ⑤ 급여압류 비대상 및 보증보험 가입 가능자 ⑥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직계 존/비속 거래 제외)
	⑦ 신청 기준일 기준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가 1년 내 임차계약 시	**⑦ 매수일 기준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1주택자가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고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신청 기한	주택 임차 : 임차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21. 10. 1 ~ 22. 9. 30)	① 주택 구입 : 등기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21. 10. 1 ~ 22. 9. 30) ② 분양 아파트 (재개발) 구입 : 계약금(중도금) 지급일로부터 등기이전일 이내 ③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 계약금(중도금) 지급일로부터 입주일까지 ④ 조합 아파트 구입: 사업계획 승인일 로부터 입주일 이내 ⑤ 주택 증, 개축시 : 증, 개축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21. 10. 1 ~ 22. 9. 30)

**매수일 : ① 주택구입자 – 등기이전일, ② 분양아파트/재개발/임대아파트 분양전환 – 계약체결일,*
③ 조합아파트 – 사업계획 승인일

※ 최대 지원 가능 범위 內 이전 주거형태와 비교하여 추가 발생된 차액만큼 신청 가능 합니다 .
※ 제도수혜를 받고자 하는 주거형태(구입/임차)의 신청기준일자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택 구입시 매수일 이후 다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는 지원 불가
※ 분양아파트 : 계약체결일로 부터 등기완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주택구입기준(등기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적용

Ⅲ. 조합원 주거지원금 신청기간

- 주거지원금 신청 기준일자 : **22. 10. 1(토)**
- 1차 접수 : 10. 4(화) ~ 10. 14(금)
- 2차 접수 : 10. 17(월) ~ 10. 26(수)
- 지급 예정일 : 1차 접수분 11. 4(금), 2차 접수분 11. 14(금)

첨부. 제출서류

Ⅰ. 공통 제출 서류

구분	내용
새마을금고 신청양식	✓ 새마을금고, 보증보험 양식 - 서명 必 - 대출신청서(급여계좌기재), 대출거래약정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 자동계좌이체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비여신 및 상품서비스 안내용) - 회원가입 및 출자거래 신청서, 예금거래 신청서 - 고객거래확인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가상통화 관련 고객확인서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 - 보증보험계약 중요내용 상품설명서 - 계약 체결 · 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위임장
개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양면 복사)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 최근 1년간 주소지) –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 작년('21년) 원천징수 영수증 + 재직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미과세증명서 1부 (최근 2년) - 기관발급용 [전국단위 주택 및 건물, 재산세(주택) 내역]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과세자일 경우 과세증명서 [재산세(주택) 내역 必] - 배우자와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각각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 과세년도 최근 2년 설정
- 전국 자치단체로 발급, 재산세(주택, 건축물) ※ 기타항목 불필요

Ⅱ. 개별 서류 (주거형태별 필수 제출)

구분		내용
주택 임차		① 前 거주지 매도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必), ② 現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必)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부 등본
주택 구입	✓일반 주택구입	① 前 거주지 매도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必) ② 매수 거주지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신규아파트(재개발) 분양	① 前 거주지 매도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必), ②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중도금) 납입영수증(건설사발급)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시	① 前거주지 매도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必)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부등본 ②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중도금) 납입영수증 (건설사발급)
	✓조합아파트 구입시	① 신규아파트 분양시 필요서류, 사업계획승인서, ② 중도금(계약금) 납입영수증(건설사발급)
증축/개축		공사계약서 사본 (견적서 포함),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대금지불 영수증 사본

※ 전 거주지 부모 소유 : 전 거주지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전 거주지 기숙사, 사택 : 퇴거 확인서
※ 증축 : 층수 또는 전용면적 늘린 경우
※ 개축 :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내벽, 보, 지붕틀, 기둥) 중 3개 이상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할 때 **(리모델링 제외)**

첨부. 주요 문의사항

Q. 주택 임차계약을 했는데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A. 임차계약일이 21. 10. 1 ~ 22. 9. 30 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 무주택조건 必

Q. 주택구 입을 했는데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CASE 1) 일반 주택택 구입자 - 등기이전완료일이 21. 10. 1 ~ 22. 9. 30 에 해당할 때

ex) 매수한 주택 등기이전완료일이 22.3 .3 이 었고, ※ 1 주택자였다면 등기이전완료일 이전 매도 하였을 때 신청 가능

CASE 2) 분양아파트/재개발/임대아파트 분양전환 –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일 이내

ex)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고 등기이전을 아직 안했을때 신청가능

ex) 계약 체결일로 부터 등기완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등기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1 주택자였다면 계약 체결일 이전 보유 주택 매도 必

CASE 3) 조합아파트 –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입주일 이내에

ex) 사업계획 승인이 났고 입주를 아직 안했을때 신청 가능 ※ 1 주택자였다면 계약 체결일 이전 보유 주택 매도 必

CASE 4) 주택 증, 개축시 : 증, 개축 공사 완료일이 21. 10. 1 ~ 22. 9. 30 에 해당할 때

Q. 이미 타은행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 없이 주거지원금 대출이 나올까요?

A. 기존 대출 보유액, 개인 신용등급, 정부 금융규제(DSR 등) 에 따라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정 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지참하시고 새마을금고 방문하시면 대출 가능 한도 확인 가능합니다.

Q. 6개월 전까지 사택을 이용했고, 지금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22.10.1 기준 기숙사/사택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퇴거확인서 발급 必)

Q. 본인 부담 이자율은 어떻게 변동되나요?

A. 매년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통해 갱신되며, 본인 부담 이자율은 1~2%사이에서 변동 됩니다.
시중 금리가 더욱 인상되더라도 본인 부담은 연 2%를 초과하지않으며,
추후 금리 인하시 연 1% 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중도상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상환 기간중이라도 새마을금고 방문하시면 수수료없이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Q. 인지세도 내야 하나요?

A. 기존 새마을금고 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주거지원금 포함하여 총 대출액이 1억 초과하면
3만 5천원 인지세 발생

Q. 주거지원금 상황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 시 주거지원금 잔액 전액을 일시 상환 하셔야 합니다.

Q. 투자 목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모텔, 펜션 등)을 가지고 있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임차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A. 주거 안정 목적의 제도 취지 상, 상기 사항들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임차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